2019년도 제12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 2019. 7. 23.(화요일), 10:00

o 장　　소 : 보호원 9층 회의실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 전응준(분과위원장)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1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269건(안건번호 제2019-75764호~7792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19-75764호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신설 전 불법복제물을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시정권고를 하더라도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나머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268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전응준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1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전응준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음

- B 위원 : 회의록에 이견이 없고 회의록 공개 의견임

- C 위원 : 동의함

- 전응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75764호~77928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3,269건임

(민원인의 신고 내용과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75764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2007. 2. 9. 단편소설 “화랑의 후예” 전문을 작품설명 등과 함께 첨부파일 형태로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하는 시정권고의 근거가 되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는 시정명령의 근거가 되는 저작권법 제133조의2는 2009. 4. 22. 일부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9625호, 2009. 7. 23. 시행)에 신설되었음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건 게시물에 시정권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17. 3. 민사사건에서 “업로드된 침해 저작물이 인터넷상에 존속하는 동안은 여전히 이용에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계속적 행위에 대하여서는 타인이 이를 용이하게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용제공 행위는 복제와 달리 계속적 성격을 갖고 있음

- 전응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75764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첨부파일은 현재 다운로드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현재 다운로드 가능하며 주제, 등장인물 등 작품설명과 줄거리가 함께 제공

되고 있음

- B 위원 : 무단으로 제공된 분량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소설 한 편 전체분량이고 한글파일 약 10페이지 분량임
  소설과 함께 제공하고 있는 핵심 정리와 감상 부분도 게시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여기에 대해 또 다른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이 또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 A 위원 : 불법복제물을 온라인에 업로드 한 행위가 전송권침해 '즉시범'이나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학설이 다양하여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움
  다만 본 안건의 경우 현재까지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시정권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음

- 정현순 전문위원 : 형사적으로 '계속범', '즉시범' 논의도 참고해야 하겠지만 행정법규가 제정되기 전에 일어났던 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소급적용이 문제가 될 것임
  결국 사실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임

- B 위원 : 동의함
  본 건에 대해서는 즉시범, 계속범 관점보다는 현재 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전송행위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C 위원 : 단편소설 전체 분량을 게시한 건은 해당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A 위원 : 동의함

- 전응준 분과위원장 : 안건번호 제2019-75764호는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전응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75765호~7792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19-75765호~77928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 B 위원 :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캠버전인지 질의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화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캠버전인 것으로 보임

- B 위원 : 파일명에 TC, HDTS 등으로 표시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캠버전일 가능성이 높음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영화 '알라딘'

의 흥행에 힘입어 최근 웹하드 사이트에서 주연배우 등이 부른 OST와 영화저작물 모두 다량의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음

- B 위원 : 지금 보고 있는 영상들의 경우 “1XBET.COM” 등의 로고가 박힌 것으로 보아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 유치용으로 제공한 불법복제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 C 위원 : 모두 데드카피하여 전송한 사안들이므로 해당 저작물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정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A 위원 : 이견 없이 동의하며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B 위원 : 이견 없이 동의함

- 전응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75765호~7792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75764호~77928호의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

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전응준 분과위원장이 제12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2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7. 30.

분과위원장 전응준

위원 박성호

위원 임진모